

서민을 따뜻하게 증산총을 두텁게



#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제정안 관련기관 의견조회

우리부는 현재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련중인 있는 제정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09.11.6일(금) 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정한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만제곱미터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초고층건축물
- 차량동선 : 차량 진입로에 진입차단봉 설치, 차량진입로는 L, S자로형 설계
- 건축물형태 : 폭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계
- 기타 건축 실내 공간계획, 피난 및 실계계획 등 규정

| 제정 안 | 검토 안 | 시 유 |
|------|------|-----|
|      |      |     |

불임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안) 관련기관 조회용 1부. 끝.

국토해양



수신자 SH공사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대한건축학회장

직원 윤철주 시설팀사무원 전일 10/26 김태곤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691 (2009. 10. 26.) 접수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권문로 88 중일동 1번지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202 전송 02-503-7324 / cheolja@mltm.go.kr / 비공개(5)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다변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50층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 제2장 대지 및 배치계획

제3조(대지경계 및 배치계획) ① 대지 계획시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혹은 성토 등을 통해 가급적 건축물의 대지가 주변 지역보다 높게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건축물 배치는 대지의 모든 면, 특히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③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는 클리어 존(clear zone)으로 계획하여 건축물 내부에서 대지까지 시야를 방해하는 조경이나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폭발물 등의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④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건축물 대지 주변에는 기초가 충분히 강화된 블라드나 플랜트 박스, 혹은 뿌리가 깊은 조경수 식재 등으로 연속적 장애물을 구축한다. 특히 도로에 접한 면은 장애물을 대지 경계가 아닌 보도 경계 끝에 설치하여 건축물 외피로부터 이격거리를 증가시키도록 하며, 조경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보도 경계 사이에 이중의 장애물을 설치한다.

제4조(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① 차량폭발테러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원 및 서비스 차량과 방문객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며, 모든 차량의 진입로 입구에는 진입통제장치(진입차단봉 등)을 설치하고 수상한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대지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로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차량 진입로는 차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을 L, S자 형 등 곡선으로 설계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시설은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특히 방문객 주차장은 대지 여건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 옥외시상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④ 지하주차장은 건축물의 외곽선 바깥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최소한의 면적만이 외곽선 안쪽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필로티 하부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는 차량의 통행 및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조(보행 동선 및 진출입 계획) ① 건축물로 진입하는 출입구 수는 최소한으로 계획하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외에 지하천 역, 지하주차장 등과 연결된 동선은 반드시 경비·안전요원이 배치된 체크 포인트를 통과하여 건축물 내로 진입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② 지하층 및 주차장과 연계된 승강기의 경우 경비·안전요원에 의하여 진·출입의 통제가 가능한 층에서 환승하도록 계획한다.

③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주요 수직 동선은 동제가 용이하도록 경비실과 인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우편물 접수 및 분류실, 택배 접수 창구, 하역실 등은 위험물건의 무단 반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비·안전요원이 확인 가능한 경비실 인근에 배치한다.

### 제3장 건축 및 실내 공간계획

제6조(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 ① 건축물 형태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가급적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② 지층부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은 가급적 크기와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층부, 로비 등에 설치되는 창문유리나 마감재 등은 미산파편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실내 공간계획) 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공간은 수직 및 수평으로 분리하여 배치하고 그 사이에 완충공간, 혹은 강화된 벽체나 슬래브를 배치한다.

② 인명 피해가 크고 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공간은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여 가급적 건축물 중앙부에 배치하고 건축물 외피와의 사이에 완충 공간, 혹은 강화된 벽체나 슬래브를 배치한다.

제8조(보안관리 및 감시체계) ① 복합시설의 경우 시설 내 경비, 순찰업체 간 안전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팔독정 다수의 이용객의 주요 출입동선에는 경비·안전요원의 배치 외에도 CCTV를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실내 조정, 로비, 고객 대기 장소의 휴지통 등 위험물질을 은닉하기 용이한 장소나 경비, 순찰 사각지역에는 반드시 경비, 순찰 및

청소·확인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자연적 감시의 사각시대 및 순찰  
관련지역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항상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장 피난 및 설비계획

제9조(피난계획) ① 건축물 내 모든 부분에서 인의로 선택한 2방향  
이상의 피난경로를 확보해야 하며, 피난 경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② 피난을 위한 비상계단 및 비상 승강기 등은 주차장이나 하역공  
간, 우편물 분류실 등과 같은 폭발 위험공간과 가급적 이격하여 배  
치한다.

③ 피난 경로가 되는 주요 동로에는 비상 손전등, 방독면 등을 비치  
하되, 비상출구 표시등은 눈높이에 맞게 천장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제10조(설비 계획) ① 테러발생 등 비상시 중요한 기계 전기 시스템  
(경보장치, 비상출구 표시등,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배연 설비,  
비상용 승강기 등)의 작동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비상전원이 확보  
되어야 하며, 기계실을 주차장, 하역공간, 우편물 분류실 등의 폭발  
위험공간과 가급적 이격하여 배치한다.

② 주동력 변압기(transformer)는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건축물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분산 배치하여 폭발이 일어나  
도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기흡입구는 접근방지와 독가스, 유해가스 등의 유입방지를 위  
하여 벽면과 같은 면에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